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57
- 발 의 자 : 박래학 의원(찬성자 10명)
- 발 의 일 : 2017년 8월 10일
- 회 부 일 : 2017년 8월 10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 (2017. 8. 16. ~ 8.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u>지방공무원</u>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u>지방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 2. (생략)</p>	<p>서울특별시 <u>공무원</u>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u>서울특별시 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 「지방공무원법」 제1조와 제2조1)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표현인바, 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해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④ 생략

- 또한, 개정안은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미 조례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기 개정한바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춘천시(2017년 7월)의 사례가 있음.

- 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법령에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바, 용어 사용상의 혼돈이 없도록 개념의 정립 또는 상위법령의 용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